

II. PL의 미국 특징

글 · 이재필 대표이사
에스 · 디엔지니어링(주)

불문법(不文法)은 문서의 형식을 취하고 정규의 제정절차를 거친 이른바 성문법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관습법이 대표적이고 판례법이나 조리(條理)도 이에 속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이 법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PL)은 이러한 불문법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그것은 대조적으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역사도 꽤 오래되어 장장 1926년으로 소급되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여하튼 불문법은 글자로 표현되고 조문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례상 인정되는 법인데, 판례의 누적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의 제조물책임법리는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자에게는 과다한 보상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여타국가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미국내에서의 PL소송을 통해 막대한 배상손실을 초래하여 값비싼 경험을 한 바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여타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예상밖의 소송(Frivolous Suits)을 들 수 있다. 둘째, 연대책임과 이와 관련된 디포켓이론(Deep Pocket Theory)이다. 셋째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인데, 앞날을 경계하는 뜻으로 벌을 준다는 의미로서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응징한다는 취지로 주는 벌이다. 넷째 정기적 배상(Structured Settlements)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이다.



찾아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배상에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예상밖의 소송(Frivolous Suits)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동양권의 나라들 특히 유교문화권의 풍토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법정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다. 통상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법정에서 잡다한 소송으로 이어져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의 주된 원인으로는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제의 정착, 저렴한 소송비용, 대다수 국민의 법치주의 관습과 이로 인한 소송만능주의 등 미국의 특수한 소송제도의 사회적 토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소송은 재판의 전수를 늘리고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또 소송상 소요시간을 연장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자제하고 될 수 있는 한 제한하고자 하는 의회와 주(州)정부의 움직임이 있다.

둘째, 연대책임과 이와 관련된 디프포켓이론(Deep Pocket Theory)이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대책임이란 2인 이상의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 사이의 책임정도와는 무관하게 어느 한쪽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금 전체도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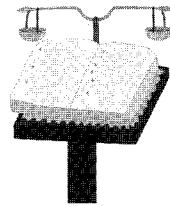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1%의 책임이 있는 갑(甲)과 99%의 책임이 있는 을(乙)이 공동가해자인 경우, 을에게서는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고 갑에게는 충분한 배

상여력이 있다면, 갑은 책임분담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100%의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에 갑은 을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하게 되지만 책임분담 비율에 비해 과다한 부담을 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연대책임법리는 특히 교통사고나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사고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의 경우 일수록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통해 다시 이윤창출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한(Deep Pocket) 대기업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인 공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는 이유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은 간혹 전혀 책임이 없는데도 연루가 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의 엄청난 부당금을 부담하는 일면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인데, 앞날을 경계하는 뜻으로 벌을 준다는 의미로서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응징한다는 취지로 주는 벌이다. 그래서 여기서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안전의무의 고의적 태만이나 증거은닉과 같은 악의가 있는 경우에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훈육효과를 얻기 위해 도입된 법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최초에는 전보적(填補的) 배상금액의 2배배상(Double Damages) 또는 많아야 3배배상(Triple Damages)이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評決 : verdict)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공소심에서는 역전이 되거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징벌적 배상금액은 기업의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또 이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 도산으로 전락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관계로 기업체에서는 PL 예방의 많은 부분이 이 징벌적 배상책임의 위험을 회피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늘 무게를 두고 있다.

넷째 정기적 배상(Structured Settlements)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이다. 배상금액이 너무 높고 특히 징벌적 배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PL보험에서도 이것을 커버할 수 없으므로 제조자의 자력에 의한 오직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체에서는 지불하고 싶어도 현찰이 부족하여 일시에 지불하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배상금은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 회에 나누어 지불하는 할부지불(installments)도 허용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의 사정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어느 시기까지 지불 완료하는 형태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PL소송의 남발,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액, 수없이 많은 사소한 예상밖의 자디 잔 소송사건들, 정기적 분할 배상 등 여타국가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법리의 적용은 미국내에서 특정한 산업이 무리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일치된 사회여건을 형성하여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체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소비자과잉보호라는 중심에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특수법리의 그나마 그런 대로 정착된 것은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꽂피었고,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합리주의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정돈된 사회분위기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정착된 데다가 초현대적인 유통체계의 확립,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형성 등이 작용하여 소비자천국을 일구어낸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성이 정착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초중심의 지상낙원을 만든 것도 큰 요인인 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제조물책임에 의한 강화된 컨슈머리즘(consumerism)이라는 측면이외에 기업활동에 위축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최근에는 주(州)별로 다양한 보완장치를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에게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미국내에서의 PL소송을 통해 막대한 배상손실을 초래하여 값비싼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타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를 근간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를 변경하고 개정하며 보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도 향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